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을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336

발의연월일: 2025. 2. 21.

발 의 자:정을호·추미애·서미화

정태호 · 한준호 · 전현희

강경숙 · 김준혁 · 맹성규

백승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대학의 장은 장애학생의 교육 및 생활에 관한 지원을 총괄·담당하는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장은 해당 대학의 교직원으로서 장애학생 지원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등으로 규정되어 있음.

그런데 최근 장애학생지원센터 현황을 실태 조사한 결과,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운영하는 288개 대학 중 25개 대학은 자격이 없는 센터장이 운영하고 있었고 61개 대학은 대학의 장이 정하는 모호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센터장을 맡고 있는 등 장애학생지원센터의 부실한 운영으로 장애학생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충분하지 못한 환경을 초래하고 있어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장의 자격 요건

을 상향하여 현행법에 규정하고 이 자격 요건을 위반하여 장애학생지 원센터의 장을 임명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장애학생 의 권익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3항, 제39조 신설).

법률 제 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장은 해당 대학의 교직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대학의 장이 임명한다.
- 1. 교육학, 사회복지학 등 장애인 인권 관련 분야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
- 2. 교육, 보건·의료, 복지 등 분야의 「자격기본법」에 따른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국가자격을 소지한 사람
- 3. 장애학생 지원 및 복지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자격으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제3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과태료) ① 제30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사람을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장으로 임명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30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학생 수가 일정 인원 이하인 소규모 대학 등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 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0조(장애학생지원센터) ①・②	제30조(장애학생지원센터) ①・②
(생 략)	(현행과 같음)
③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장은	③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장은
장애인 인권에 대하여 전문적	해당 대학의 교직원으로서 다
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격을 갖추어야 한다.	대학의 장이 임명한다.
	1. 교육학, 사회복지학 등 장애
	인 인권 관련 분야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
	2. 교육, 보건·의료, 복지 등
	분야의 「자격기본법」에 따
	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자격을 소지한 사람
	3. 장애학생 지원 및 복지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
	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
	지의 규정에 준하는 자격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u>갖춘 사람</u>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u><신 설></u>	제39조(과태료) ① 제30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사람을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장으로 임명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30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학생 수가 일정인원 이하인 소규모 대학 등의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